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웅식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1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최웅식, 김창원, 김태수,
김평남, 박기열, 박상구,
박순규, 성흠제, 홍성룡
의원(9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김경우, 김기대,
김기덕, 김정태, 김정환,
김제리, 노승재, 박기재,
송아량, 양민규, 이광성,
이영실, 이정인, 임종국,
장상기, 전석기, 황규복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지하개발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유입되어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, 생활용수 등 도시 가용수자원이나 하천용수로의 배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유출지하수를 「지하수법」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,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함.
(안 제34조제1항제1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하수법」, 「지하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유출지하수를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,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

별표 2 가목의 비고란 제2호 중 “업종 및 사용 여부에”를 “업종구분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4조(감면)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</p> <p>1. ~ 10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><u>11.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: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</u></p> <p>별표 2.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 구분(제23조관련)</p> <p>가. 하수도사용료 요율표(1개월 기준)</p> <p>※ 비고</p> <p>1. 생략</p> <p>2.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<u>업종 및 사용 여부에</u>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.</p>	<p>제34조(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<현행과 같음></p> <p><u>11. 유출지하수를 「지하수법」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,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</u></p> <p><u>12. <현행과 같음></u></p> <p>별표 2.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 구분(제23조관련)</p> <p>가. <현행과 같음></p> <p>※ 비고</p> <p>1. <현행과 같음></p> <p>2. ----- <u>업종 구분에</u>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u><부칙신설></u>	<u>부칙</u> <u>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

문서번호	2021072800000002
------	------------------

비용추계서

요청인 : 최웅식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7.28	
회신일 : 2021.08.04	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(감면)제1항제12호 신설에 따라 세입감소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안 제34조제1항제12호에 유출지하수를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,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

나. 전제

- 2020년 유출지하수를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한 용량을 기준으로 산출

다. 추계기간

- 2022~2026년으로 함(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발생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≒ 2,543,685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2022	2023	2024	2025	2026	합계
세입	유출지하수 감면 (안 제34조제1항제12호)	△508,737	△508,737	△508,737	△508,737	△508,737	△2,543,685
	소계 (a)	-	-	-	-	-	-
세출	-	-	-	-	-	-	-
	소계 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b-a)		508,737	508,737	508,737	508,737	508,737	2,543,685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
담당관
추계세제팀장
예산분석관

예산정책담당관
조도형
이원상
박주용

☎ 02-2180-7954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(감면)제1항제12호 신설에 따라 세입감소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유출지하수 감면 = 2,543,685천원
 = 배출량(톤/일) × 하수도요금(400원/톤) × 1년(365일)
 × 감면률(50/100) × 5년
 = 6,969톤/일 × 400원/톤 × 365일 × 50/100 × 5년
 - 1일 배출량 산출내역(2020년 기준)

(단위 : 톤)

구분	계	직방류 등 하수관로 미이용			하수관로 이용				
		소계	하천유지용수	수경시설인공함양	소계	도로청소	조경용수	건물용수	기타
배출량	129,892	122,924	114,419	8,505	6,969	215	1,064	5,602	88

주 : 하천유지용수 및 수경시설 인공함양 활용 후 직방류 등 하수관로 이미용 유출지하수는 하수도요금 미부과

※ [참고] 서울시 물재생정책과 ‘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하수도 요금 부과 현황’ 참조

[참고]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하수도 요금 부과 현황

유출지하수 발생 및 이용량

○ 발생량

(’20년, 톤/일)

구분	계	지하철	건축물	전력구	통신구
발생량	195,649	122,570	45,820	14,670	12,589
이용량	129,892 (66.39%)	100,541 (82.03%)	6,898 (15.05%)	11,460 (78.12%)	10,993 (87.32%)

○ 용도별 이용량

(’20년, 톤/일)

구분	계	하천 유지용수	도로청소	조경용수	수경시설 인공함양	건물용수	기타
계	129,892 (100%)	114,419 (88.1%)	215 (0.2%)	1,064 (0.8%)	8,505 (6.5%)	5,602 (4.3%)	88 (0.1%)
지하철	100,541	91,385	98	225	6,889	1,890	54
건축물	6,898	1,728	117	839	468	3,712	34
전력구	11,460	11,460	0	0	0	0	0
통신구	10,994	9,846	0	0	1,148	0	0

※ 건물용수 : 열원(에너지원), 화장실, 건물청소 등

세입감소 추산 (’20년 기준)

○ 유출지하수 발생량(도로, 조경, 건물, 기타) : 6,969톤/일

※ 하천유지용수 및 실개천 등 활용 후 직방류되는 유출지하수는 하수도요금 미부과

$$6,969\text{톤/일} \times 400\text{원/톤(하수도요금)} \times 365\text{일/년} \times 50\%(\text{감면율}) = 509\text{백만원/년}$$

유출지하수 하수도요금 부과(5년간)

년도	개소수	하수도요금(원)	년간부과량(톤/년)	일부과량(톤/일)
2020	4,341	8,227,398,060	20,692,323	56,691
2019	3,962	6,858,832,880	17,376,341	47,606
2018	3,681	6,036,675,880	17,064,249	46,751
2017	3,354	5,089,972,250	15,604,933	42,753
2016	3,101	4,504,023,860	14,966,637	41,004